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 폐지

1. 폐지 이유

- 학생의 취업과 학력신장을 위해 졸업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졸업자격인증 미통과로 수료생 증가 추세(졸업자격인증 미통과자 60% 이상 차지)
- 졸업자격인증 기준에 비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기준이 월등히 높아 실효성 부족
 - 외국어, 컴퓨터 능력보다는 인턴경험 등 학생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무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

2. 주요내용

-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학칙」 제75조(졸업자격인증), 제77조(졸업 및 학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추진일정

- 가. 졸업자격인증제 및 지침 폐지(안) 내부결재: 2021. 5. 21.(금)
- 나. 졸업자격인증제 및 지침 폐지(안) 의견조화: 2021. 5. 24.(월) ~ 5. 31.(월)
- 다. 간부회의 보고: 2021. 5. 31.(월)
- 라. 졸업자격인증위원회 서면심의: ~ 2021. 6. 4.(금)
- 마. 확대간부회의 심의: 2021. 6. 7.(월)
- 바. 총장결재 및 지침 폐지: 2021. 6. 8.(화)
- 사. 졸업자격인증 미통과로 인한 기수료생 졸업처리: 2021. 8. 31.(화)

붙임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 폐지(안) 1부.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 폐지(안)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분야) ① 졸업자격인증분야는 외국어, 컴퓨터, 꿈-설계 상담, 취업, 학과(전공)별 자율기준으로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에 의한 꿈-설계 상담을 필수로 하고 외국어, 컴퓨터, 취업, 학과(전공)별 자율기준 중 적어도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인증자격 취득서를 분야별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졸업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우리대학 졸업대상자 중 각 분야별로 학교를 대표하거나 빛낸 인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글로벌 인재로 인증하는 글로벌인재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삭제

제3조(적용대상) ① 졸업자격인증제도는 춘천캠퍼스의 경우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삼척캠퍼스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도로 정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거한다.

② 꿈-설계 상담 분야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및 시행주관부서

제4조(졸업자격인증위원회) ① 본 인증제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자격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졸업자격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육지원처장, 정보화본부장, 교양교육원장, 국제교류처장, 기획지원처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인증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외국어분야 운영위원회
2.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
3. 꿈-설계 상담분야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각 캠퍼스 분야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어분야는 국제교류처장(삼척캠퍼스는 기획지원처장), 컴퓨터분야는 교양교육원장(삼척캠퍼스는 정보화본부장), 꿈-설계 상담분야는 학생처장(삼척캠퍼스는 교육지원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캠퍼스 분야별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 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시행주관부서) ① 각 분야별 시행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어 : 언어연수과(삼척캠퍼스는 기획지원과)
2. 컴퓨터 : 교양교육원(삼척캠퍼스는 정보화과)
3. 꿈-설계 상담 : 취업지원과(삼척캠퍼스는 교육지원과)
4. 취업 및 학과(전공)별 자율기준 : 각 학과(전공)

② 시행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시행계획 공고, 시험 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실시한다.

제3장 인증기준 및 분야선택

제7조(인증기준) ① 각 분야별 최소 인증기준은 별표 1 분야별 최소인증기준표 및 별표 2 대학별 외국어 최소인증기준표에 따른다.

② 예·체능계 학생의 인증기준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인증등급제) ① 제7조의 인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인증 등급제를 시행하되, 그 등급별 인증기준은 별표 3 등급별 인증기준표에 따른다.

② 외국어(영어)분야의 경우에는 교내 인증시험에 의해서도 인증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의 방법에 의해 인증기준을 통과할 경우 인증등급을 보통으로 한다.

제9조(분야선택) ① 신(편)입학생은 첫 학기에 소속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증분야를 선택하고 교내 졸업자격인증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별 시행주관부서는 학생의 분야선택 현황을 매 학기말에 파악하여 다음 학기초까지 해당 대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분야선택 현황을 통보 받은 대학장은 인증분야 선택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어분야

제10조(외부 공인시험) ① 외국어분야 운영위원회는 별표 1에서 정한 외부 공인시험 외에 다른 외부공인시험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류와 기준 점수를 정하여 적용하는 학년도의 3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공인시험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한 인증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교내인증시험) ① 외국어분야를 선택한 학생 가운데 교내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분야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내인증시험의 일정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은 매 학년도 초에 공고한다.

③ 전형료는 1회에 한하여 학교가 부담하며, 2회 이상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제12조(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교양 교육과정 외국어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하여 각각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외국어분야의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컴퓨터분야

제13조(외부 공인자격증 및 시험)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에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인증 가능한 과정별 국내·외 공인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 외부 공인평가지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교양 교육과정 컴퓨터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하여 각각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컴퓨터분야의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취업 분야

제15조(인증방법) ① 취업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자격 취득서와 취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시행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 :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부 확인서
 2. 농림축산 및 어업 종사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종사 확인서 (농·임·어업인 확인서,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내역서 등)
 3. 창업(사업)자
 - 가. 사업자등록증
 - 나. 소득금액증명원(단, 전년도 연간 소득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취업자 인정 기준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해당 학생이 서류를 제출한 날의 3개월 전부터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장 학과(전공)별 자율기준 분야

제16조(인증방법) ① 학과(전공)의 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학과(전공) 특성과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기술·전문·민간 자격증에 한한다)
2. 학과(전공) 특성과 관련하여 참여 대상자가 전국 단위 이상인 공모전 또는 대회 수상 경력

② 학과(전공) 자율기준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자격 취득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상장(수상 경력 증명서를 포함한다)을 시행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17조(학위취소) 졸업자격인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빙 자료가 허위인 경우, 총장은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7조에 따라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절차) ① 학생이 교내인증시험이외의 방법에 의해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시행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사항과 교내인증시험 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해당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장은 졸업사정전에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방법의 방법에 의해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자격 취득서[서식3]를 시행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시행주관부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9조(인증결과처리) ① 인증 결과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한다.

② 필요한 경우 졸업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정 2002. 1. 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입학자는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개정 2004. 2.2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입학자는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2003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은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개정 2004.12. 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컴퓨터 관련학과 학생들이 2004.12.31.까지 컴퓨터분야 산업기사 수준의 국내·외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졸업자격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인정된 컴퓨터분야 졸업자격 인증등급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3. 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3. 1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경영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2. 1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및 제8조(인증등급제)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6. 17)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0년 3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외국어 외부공인 인증시험 성적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인증기준) 및 제8조(인증등급제)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 7. 4)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및 제8조(인증등급제)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4조의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2001학년도 입학자 및 2003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삼척캠퍼스는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이 2011. 7.20까지 독서 인증을 통과한 경우 졸업자격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글로벌인재 인증제는 2012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4. 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7. 12)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8. 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는 2011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4. 2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관련 분야별 최소인증기준표(컴퓨터) 워드프로세서 2급 폐지대상은 201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2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9. 1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2. 12)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4. 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3.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자격인증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학과(전공)의 소속 학생에게는 졸업자격인증분야 중 일부만 적용한다.

1.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 외국어, 꿈-설계 상담, 취업, 학과(전공)별 자율 기준

2. 문화예술 · 공과대학

가. 기계의용 · 메카트로닉스 · 재료공학부(기계의용공학전공) : 외국어, 꿈-설계 상담, 취업, 학과(전공)별 자율 기준

나. 에너지자원 · 산업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전공) : 외국어(단, 제12조에 따른 교과목 이수율 통한 인증은 제외한다), 꿈-설계 상담

부칙 (개정 2020. 09. 0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야별 최소인증기준표

인증분야	외국어
인증기준	1. 영 어 가. 외부공인시험 1) TOEIC 550점 이상 2) TOEFL (CBT 137점 이상, PBT 457점 이상, IBT 47점 이상) 3) TEPS 440점 이상 4) TOEIC-SPEAKING : 110점 이상 5) OPIc : IM1 등급 이상 6) NEW TEPS : 235점 이상 7)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공인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나. 교내인증시험 합격자 (단, 영어 관련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제8조의 인증등급제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독일어 가. 외부공인시험 : Start Deutsch2(A2)이상 (단, 독일어 관련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제8조의 인증등급제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3. 프랑스어 가. 외부공인시험 : DELF A1 이상 (단, 프랑스어 관련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제8조의 인증등급제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취득 하여야 한다) 4. 중국어 가. 외부공인시험 : HSK(한어수평고시) 4급 이상 (단, 중국어 관련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제8조의 인증등급제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일본어 가. 외부공인시험 1) 일본어능력시험(JLPT) N3급 이상 2) JPT 450점 이상 (단, 일본어 관련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제8조의 인증등급제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분야	컴퓨터
인증기준	1.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보통 이상의 국내·외 자격증을 1종 이상 취득한 자 - 전산회계, AutoCAD,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문서실무사, MOS Core, PC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 기계설계제도사, 전산세무, JCDL, ICDL Start 2.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외부 공인기관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단,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제8조의 탁월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분야	꿈- 설계 상담
인증기준	1. 공 통 : 최소기준은 4회 이상으로 하며, 단과대학 별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조기졸업자 포함) (단, 편입생 최소기준은 2회 이상으로 한다.) 2. 춘천캠퍼스 : 간호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미래농업융합학부, 계약학과·학부, 장애학생 제외 가능 3. 삼척캠퍼스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계약학과·학부, 장애학생 제외 가능

※ 학칙 제75조에 의한 졸업자격인증 의무 제외 학과 등

1. 수의과대학 : 수의학과
2. 약학대학 : 약학과
3. 간호대학 : 간호학과(다만,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적용)
4. 보건과학대학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5.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6. 계약학과·학부
7. 장애학생

[별표 2]

대학별 외국어 최소인증기준표(제7조 관련)

캠퍼스	대학명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NEW TEPS
			PBT	CBT	IBT				
춘천	간호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경영대학	650	533	200	73	526	130	IM1	283
	농업생명과학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동물생명과학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문화예술·공과대학 (예·체능계열 제외)	600	487	163	57	480	120	IM1	257
	문화예술·공과대학 (예·체능계열)	300							
	사범대학	700	553	217	82	572	140	IM2	309
	사회과학대학	650	533	200	73	526	130	IM1	283
	산림환경과학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의생명과학대학	600	487	163	57	480	120	IM1	257
	인문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자연과학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IT대학	600	487	163	57	480	120	IM1	257
삼척	공학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보건과학대학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예·체능계열 제외)	550	457	137	47	440	110	IM1	235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예·체능계열)	300							

※ 제7조 제2항에 의한 예·체능계열 별도 지정 학과

- 문화예술·공과대학 스포츠과학과 : 2018학번 이후(토익 기준 550점 이상)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2016학번 이후(토익 기준 550점 이상)

※ [별표2] 외 외국어 기준 점수 별도 지정 학과

대학명	학과(전공)명	기준 점수 (TOEIC 기준)	비고
농업생명 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600	2012학번 이후 ※ 2010~2011학번 : 토익 550점 이상

[별표 3]

등급별 인증기준표(제8조 관련)

인증분야		외국어	컴 퓨 터
인 증 등 급	최상	영어 - TOEIC 900점 이상 - TOEFL(CBT: 263점 이상, PBT: 623점 이상, IBT: 107점 이상) - TEPS 828점 이상 - TOEIC-SPEAKING : 160점 이상 - OPIc : IH 등급 이상 - NEW TEPS : 471점 이상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최상 및 탁월의 국내·외 자격증을 2종 이상 취득한 자 - SCJP, CCIE
		독일어 GOETHE-ZERTIFIKAT B2이상 GOETHE-ZERTIFIKAT B1 360점 이상	
		프랑스어 DELF B2 이상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6급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N1급(155점 이상) - JPT 900 이상	
	탁월	영어 - TOEIC 800~899점 - TOEFL(CBT: 240~260점, PBT: 587~620점, IBT 94~105점) - TEPS 689~827점 - TOEIC-SPEAKING : 150점 이상 - OPIc : IM3 등급 이상 - NEW TEPS : 380~470점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최상 및 탁월의 국내·외 자격증을 1종 이상 취득한 자 - BIT, CCNA,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정보통신기사
		독일어 GOETHE-ZERTIFIKAT B1 (300점 ~ 359점)	
		프랑스어 DELF B1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5급(210점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N1급(154점 이하) JPT 600~899점	
	우수	영어 - TOEIC 700~799점 - TOEFL(CBT: 217~237점, PBT: 553~583점, IBT: 82~93점) - TEPS 572~688점 - TOEIC-SPEAKING : 140점 이상 - OPIc : IM2 등급 이상 - NEW TEPS : 310~379점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우수의 국내·외 자격증을 1종 이상 취득한 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ITQ,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MOS Master, MOS Expert, ICDL Certificate
		독일어 GOETHE-ZERTIFIKAT B1 (240~299점)	
		프랑스어 DELF A2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5급(195~209점)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N2급 JPT 525~599점	
	보통	최소인증기준 통과자(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인증통과자 포함)	

[서식 1]

외국어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			
소 속	대학	학부(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시험종목		등급	시행기관
상기와 같이 외국어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외국어 분야 시험성적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u>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분야 운영위원장 귀하</u>			

[서식 2]

컴퓨터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			
소속	대학	학부(학과,전공)	학년
학번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자격종목		등급	시행기관
상기와 같이 컴퓨터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컴퓨터 분야 시험성적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u>졸업자격인증제 컴퓨터 분야 운영위원장 귀하</u>			

[서식 3]

졸업인증자격 취득서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소 속	대학	학부(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인증분야	교과목명	성적	이수학기

상기와 같이 (외국어, 컴퓨터)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졸업자격인증제 () 분야 운영위원장 귀하

[서식 4]

취업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			
소 속	대학	학부(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취업기관		재직기간	
상기와 같이 취업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납부 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u>졸업자격인증제 취업 분야 시행주관부서 귀하</u>			

[서식 5]

학과(전공)별 자율기준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					
소 속	대학		학부(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구 분		주관기관		상세내용(급수 등)	
국가공인자격증					
수상 경력					
상기와 같이 학과(전공)별 자율기준 분야 인증자격 취득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자격증 취득 확인서 1부 수상 경력 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u>졸업자격인증제 학과(전공)별 자율기준 분야 시행주관부서 귀하</u>					